중앙행정기관 청사의 수급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

의 안 번 호 1716

제출연월일 : 2024. 7. 12.

제 출 자:정 부

제안이유

행정안전부장관은 행정환경의 변화에 따른 청사 수요 등을 고려하여 매년 다음 연도의 청사수급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, 중앙행정기관이 청사수급관리계획을 제대로 이행하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청사수급관리계획의 이행 및 청사 사용에 관한 실태 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, 출입관리기준을 준수하지 않는 사람 또는 차량에 대한 청사 출입 제한,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한 제지 및 과태료 부과 등을 규정함으로써 청사 운영의 효율성 및 행정 능률 향상을 도모하려는 것임.

주요내용

가. 청사수급관리계획의 수립(안 제6조)

청사 수요가 있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매년 2월 28일까지 다음 연도 청사수급관리계획안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며, 행정안전부장관은 청사수급관리계획안, 행정환경 변화에 따른 청사 수

요 등을 고려하여 다음 연도 청사수급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함.

나. 청사수급관리계획의 이행실태 등 조사(안 제8조)

행정안전부장관은 청사수급관리계획의 이행 및 청사 사용에 관한 실태 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, 그 결과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 에게 시정 또는 보완을 요구하거나 직접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 록 함.

다. 청사 출입관리(안 제10조)

청사관리기관의 장은 청사 출입 관리에 필요한 기준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, 출입관리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하는 사람 등에 대하여 청사 출입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함.

라. 청사 질서유지(안 제11조)

청사관리기관의 장은 청사를 출입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의 생명· 신체 등에 위해를 주는 등의 행위를 하는 경우 방호인력으로 하여 금 해당 행위자에 대하여 신체적인 유형력을 행사하거나 보안장비 를 사용하여 제지하게 할 수 있도록 함.

마. 방호인력의 배치 및 직무(안 제12조)

청사관리기관의 장은 청사 보안관리를 위하여 청원경찰 등의 방호 인력을 둘 수 있도록 하고, 방호인력은 청사출입자 등에 대한 출입 통제, 물품 반입 및 반출 통제 등의 직무를 수행하도록 함.

바. 청사 시설 이용 기준 및 원상복구 명령 등(안 제14조)

청사관리기관의 장은 청사 시설 이용에 필요한 기준을 정하여 운영

할 수 있도록 하고, 청사 입주기관 또는 시설이용자가 청사 시설을 훼손한 경우 원상복구 명령 또는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함.

중앙행정기관 청사의 수급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

제1조(목적) 이 법은 중앙행정기관 청사의 수급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사 운영의 효율성 및 행정 능률 향상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- 1. "중앙행정기관"이란 「정부조직법」 제2조제2항에 따른 중앙행정 기관(그 소속기관을 포함한다)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을 말한다.
- 2. "청사"란 중앙행정기관의 사무용 또는 중앙행정기관 공무원의 주 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·부대시설 및 그 대지를 말한다. 다만, 임 차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임차한 부분으로 한정한다.
- 3. "수급"이란 중앙행정기관의 청사 수요에 따라 타당성을 검토하여 정하는 용도, 적정 규모, 취득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말한다.
- 4. "관리"란 다음 각 목의 행위를 말한다.
 - 가. 보안관리: 청사 출입, 청사 내 질서유지, 제12조에 따른 방호인력(이하 "방호인력"이라 한다) 등에 대한 관리
- 나. 시설관리: 청사 시설의 유지 및 이용 등에 대한 관리 제3조(다른 법률과의 관계) 청사의 수급 및 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률

- 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따른다.
- 제4조(청사 관리 등의 주체)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청사의 수급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총괄·조정한다.
 -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청사의 수급을 결정한다. 다만, 국방 등 특정 목적을 위한 청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사는 소관 중앙행정 기관의 장이 그 수급을 결정한다.
 -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국유(國有)의 청사를 관리한다.
 - 1. 여러 중앙행정기관이 합동으로 사용하는 청사
 - 2. 향후 여러 중앙행정기관이 합동으로 사용할 필요가 있는 청사 등 행정안전부장관이 직접 관리할 필요가 있는 청사
 - ④ 제3항에 따른 청사 외의 청사는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관리한다.
 - ⑤ 행정안전부장관은 청사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보안관리 및 시설관리에 관한 지침을 정할 수 있다.
- 제5조(청사 수급) 행정안전부장관은 국민편의, 경제성, 행정능률, 장래의 계획과의 연관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청사의 수급을 결정하여야 한다.
- 제6조(청사수급관리계획의 수립 등) ① 청사 수요가 있는 중앙행정기 관의 장은 매년 2월 28일까지 다음 연도의 청사수급관리계획안을

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-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다음 연도의 청사수급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.
- 1.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제1항에 따라 제출한 청사수급관리계획안
- 2. 행정환경의 변화에 따른 청사 수요
- 3. 청사의 합동화
- 4.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청사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-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수립한 다음 연도의 청사수급관리계획을 매년 4월 15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과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
-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중앙행정기관의 신설 및 정원 증감 등 청사 수요에 변동이 발생하는 경우 청사수급관리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.
-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청사수급관리계획수립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- 제7조(예산요구 등)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「국가재정법」 제31조에 따라 청사의 수급에 관한 예산이 포함된 예산 요구서를 제출할 때에는 제6조제3항에 따라 통보받은 청사수급관리계획을 반영하여야 한다.
 -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연도의 청사 수급에 관한 예산이 확정되었을 때에는 매년 12월 31일까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그 내역

- 을 통보하여야 한다.
- 제8조(실태조사)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청사수급관리계획의 이행 및 청사 사용에 관한 실태 조사(이하 "실태조사"라 한다)를 할 수 있다.
 -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실태조사를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.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.
 -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실태조사를 한 결과 시정 또는 보완이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시정 또는 보완을 요구하거나 직접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.
 - ④ 제3항에 따라 시정이나 보완을 요구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필요한 조치를 하고, 그 결과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 다.
- 제9조(청사 보안) 제4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청사를 관리하는 행정 안전부장관 및 중앙행정기관의 장(이하 "청사관리기관의 장"이라 한다)은 청사의 안전 및 청사 내 질서유지를 위하여 보안관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여야 한다.
- 제10조(출입관리) ① 청사관리기관의 장은 출입 절차, 물품 반입·반출 등 청사 출입 관리에 필요한 기준(이하 "출입관리기준"이라 한다)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.
 - ② 청사관리기관의 장은 출입관리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나 차량 등에 대하여 청사 출입을 제한할 수 있다.

- 제11조(질서유지) ① 청사를 출입하는 사람(이하 "청사출입자"라 한다)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.
 - 1. 다른 사람의 생명, 신체, 재산 등에 위해(危害)를 주는 행위
 - 2. 정당한 사유 없이 신체, 물품, 차량에 대한 검문·검색에 불응하는 행위
 - 3. 청사관리기관의 장의 허가 없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물품(이하 "반입제한물품"이라 한다)을 소지하고 청사를 출입 하는 행위
 - 가. 폭발성 · 자연발화성 또는 인화성 물질
 - 나. 독극물, 총포·도검류, 흉기
 - 다. 그 밖에 청사관리기관의 장이 위험 또는 유해하다고 인정하는 물품
 - 4. 청사를 점거하거나 청사 내에서 농성하는 행위
 - 5. 청사관리기관의 장이 정하는 청사 시설 촬영이 제한되는 구역(이하 "촬영제한구역"이라 한다)에서 허가 없이 촬영을 하는 행위
 - 6. 그 밖에 청사 내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
 - ② 반입제한물품을 반입하거나 촬영제한구역에서 촬영을 하려는 사람은 미리 청사관리기관의 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.
 - ③ 청사관리기관의 장은 제1항 각 호의 행위를 제지하기 위하여 방

호인력으로 하여금 해당 행위자에 대하여 신체적인 유형력(有形力)을 행사하거나 단봉(短棒), 분사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안장비를 사용하게 할 수 있다. 이 경우 유형력의 행사 등은 필요 최소한도에 그쳐야 한다.

- ④ 방호인력은 제3항에 따라 유형력의 행사 등을 할 때에는 미리해당 행위자에게 경고하여야 한다. 다만, 긴급한 상황으로서 경고를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- 제12조(방호인력) ① 청사관리기관의 장은 청사 보안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방호인력을 둘 수 있다.
 - 1. 「국가공무원법」 제2조제2항제1호에 따른 일반직공무원 중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직렬의 공무원
 - 2. 「청원경찰법」 제2조에 따른 청원경찰
 - 3. 「경비업법」 제2조제3호에 따른 일반경비원 및 특수경비원
 - 4. 청사관리기관의 장이 고용하여 청사 보안업무를 수행하는 직원
 - ② 방호인력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.
 - 1. 청사출입자 및 청사 출입 차량에 대한 검문 · 검색 및 출입 통제
 - 2. 물품 반입 및 반출 통제
 - 3. 제11조제1항 각 호의 행위에 대한 제지
 - 4. 그 밖에 청사 보안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
- 제13조(시설관리) 청사관리기관의 장은 청사에 입주한 기관(이하 "입

주기관"이라 한다) 또는 청사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(이하 "시설이용 자"라 한다)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청사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노 력하여야 한다.

- 제14조(시설 이용 등) ① 청사관리기관의 장은 청사 시설 이용에 필요한 기준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.
 - ② 청사관리기관의 장은 입주기관 또는 시설이용자가 청사 시설을 훼손한 경우 원상복구를 명령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.
- 제15조(청사관리시스템의 구축·운영) 청사관리기관의 장은 효율적인 청사 관리를 위하여 청사 관리에 필요한 전자적 시스템을 구축·운 영할 수 있다.
- 제16조(상호 협력) 행정안전부장관은 효율적인 청사 운영을 위하여 필 요한 경우 중앙행정기관 외의 국가기관의 장과 사무공간의 배정에 관하여 상호 협력할 수 있다.
- 제17조(권한의 위임) 이 법에 따른 행정안전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.
- 제18조(과태료) ① 제1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게는 1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.
 -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청사관리기관의 장이 부과·징수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